

##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

Documents to Produce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이 호 원\*  
Ho-Won Lee

### 〈 목 차 〉

I. 서론	V. 현행법에 대한 비판론 및 개선방안
II. 현행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	VI. 결 론
III. 뉴욕협약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	참고문헌
IV. 각국의 입법례	Abstract

주제어 : 중재판정, 중재합의, 원본, 정본, 등본, 서명의 진정함의 증명, 인증, 번역문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owonl@yonsei.ac.kr

## I. 서 론

### 1. 현행 중재법의 개관

현행 중재법 제37조 제2항은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 또는 중재합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인증된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중재판정의 정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 2.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39조는 “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 한다. ②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중재법 제2조 제1항 후문은 “제37조와 제39조는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37조 제2항은 국내중재판정 뿐만 아니라 외국중재판정에도 적용되나, 국제연합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경우에는 뒤에서 살필 뉴욕협약 제4조가 적용되므로, 결국 중재법 제37조 제2항은 국내중재판정과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경우에 적용된다.<sup>1)</sup>

한편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는 뉴욕협약 제4조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구하는 당사자가 제출할 서류에 관하여 “① 전조에서 언급된 승인과 집행을 얻기 위하여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a) 정당하게 서명의 진정함이 증명된 판정 원본<sup>2)</sup>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b)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② 전기 판정이나 합의가 원용될 국가의 공용어로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1) 양명희 외 8인, 「註釋仲裁法」, 대한상사중재원·한국중재학회, 2005, p.236(李鎬元 집필부분). 石光現,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제도의 개선방안”, 「國際私法과 國際訴訟」제5권, 박영사, 2012, p.719.

2) “The duly authenticated original award”는 통상 정당하게 인증된 판정원문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이 글 III.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하게 서명의 진정함이 증명된 판정 원본으로 번역함이 정확할 것이다.

는, 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문서의 공용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번역문은 공적기관인 번역관 또는 선서한 번역관, 외교관 또는 영사관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중재법은 뉴욕협약을 다시 우리 법조문으로 만들지 않고, 뉴욕협약에 따른다고만 하고 있으므로,<sup>3)</sup> 위 뉴욕협약의 조문 역시 한국법의 일부로서 직접 적용된다 할 것이다.

## 2. 문제의 제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법은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를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상 바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양자는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뉴욕협약을 우리 법조문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위 협약 제16조 제1항이 이 조약은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본을 동등하게 정문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바,<sup>4)</sup> 그 정문의 의미가 정확하게 번역되어 전달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현행 중재법은 1999년 전면 개정 당시 국제연합 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에서 1985년 채택한 국제상사 중재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이하 ‘UNCITRAL 모델법’이라 한다)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이고, 위 모델법 제35조 제2항은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에 관하여 위 뉴욕협약 제4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위 모델법을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그대로 따르지 아니한 결과 위와 같이 이원적인 규정을 두게 되었다. 한편 UNCITRAL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여 2006년에는 UNCITRAL 모델법 제35조 제2항을 “중재판정을 원용하거나 그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판정의 원본 또는 그 등본(the original award or a copy thereof)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이 해당국의 공용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에게 해당국의 공용어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개정함으로써 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있다. 이는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절차적인 요건을 완화하고, 중재합의의 형식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제7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sup>5)</sup>

3)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p.15.

4) 이 글에서는 영어 본을 기준으로 살핀다.

5) 2006년 개정된 UNCITRAL 모델법 제7조는 선택사항 1(Option 1)로서 「(1) “중재합의”는 계약상의 분쟁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 또는 특정한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는 당사자들의 합의이다. (2)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중재합의 또는 계약이 구두로, 행위에 의하여 또는 다른 수단

UNCITRAL 모델법을 수용한 우리 중재법의 입장에서 개정된 위 조항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글은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들에 대하여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우리 법의 일부로서 직접 적용하여야 할 뉴욕협약을 정확하게 해석하며, 그 개선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현행 중재법과 뉴욕협약상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를 검토하고, 각국의 이에 관한 입법례를 살핀 후 현행법에 대한 비판에 이어 개선방안을 제기하는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Ⅱ. 현행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

### 1. “중재판정의 정보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

먼저 정보와 정당하게 인증된 등본의 의미를 살핀다. 문서의 원본은 일정한 사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최초에 확정적으로 작성된 문서이고, 등본은 원본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원본을 완전히 옮겨 쓴 문서, 즉 원본 전부의 사본이다. 등본 중에서 권한 있는 자가<sup>6)</sup> 직무상 작성하고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한 것을 인증 등본이라고 하고, 정보는 등본의 일종으로서 권한 있는 자가 작성하고 법률상 원본

에 의하여 체결되었든 관계없이, 그 내용이 어떠한 형태로든 기록된 경우에는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한 것이다. (4) 중재합의가 서면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그것에 포함된 정보가 이후 이를 인용하기 위하여 출력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전자통신(an electronic communication)에 의하여 충족된다. “전자통신”은 당사자들이 데이터 메시지(data messages) 수단으로 만드는 모든 통신을 의미한다. “데이터 메시지”는 전자문서교환(EDI), 이메일, 전보, 텔렉스 또는 모사전송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전자적, 자기적, 광학적 또는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생성되고, 발신되며,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의미한다. (5) 또한 중재합의가 신청서와 답변서의 교환 속에 포함되어 중재합의의 존재가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고 상대방에 의하여 부인되지 않는 경우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한 것이다. (6)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어떤 서류이든 다른 계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우 그 중재조항을 계약의 일부로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한 중재합의가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선택사항 2(Option 2)로서 「“중재합의”는 계약상의 분쟁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 또는 특정한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는 당사자들의 합의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상세는 이강빈,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의 개정동향”, 『중재연구』제16권 제3호, 2006. 12, p.73 이하 및 손경환·심현주, “중재합의에 대한 새로운 고찰”, 『중재연구』제2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3. 3, p.66 이하 참조.

- 6) 예컨대 인증을 할 권원이 있는 자로는 소송서류에 대하여는 법원의 사무관 등, 공정증서에 대하여는 공증인,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하여는 동장, 읍면장 등을 들 수 있다.

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sup>7)</sup>

따라서 중재판정의 정본은 권한 있는 자가 중재판정의 원본 전부를 복사하고 정본임을 표시한 서면으로서 원본에 같음하여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은 권한 있는 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중재판정문 전부의 복사본을 의미한다. 중재판정에 대하여 인증문언을 작성할 권한 있는 자로는 중재판정부, 중재판정부의 의장중재인, 기관중재의 경우 그 기관의 사무국 등 판정문 관리권한자 및 중재판정문의 원본의 기탁, 예치, 등록 등의 제도가 있는 국가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그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중재인의 서명이 있는 중재판정문과 그 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공증인이 인증한 문서는 중재판정의 정본에 준하는 서류로 볼 것이다.

## 2.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

중재합의의 원본이라 함은 중재합의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중재합의는 계약서에 기재되는 수가 많으나 독립한 문서에 기재되는 수도 있고, 또 교환된 전보, 텔렉스에 있어도 무방하다.<sup>8)</sup> 요컨대 중재합의의 존재가 인정되는 문서이면 좋다. 이와 같은 문서는 그 성질상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합의의 등본이라고 함은 권한있는 자가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한 중재합의 전부의 복사본을 말한다. 중재합의의 경우, 당사자들이 대부분 중재합의 원본을 보유하므로 인증된 등본을 제출할 실제적인 필요성은 적으나, 당사자들이 원본의 제출을 원치 않는 경우 인증된 등본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 3. “정당하게 인증된 한국어 번역문”

중재판정 또는 중재합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고, 번역문은 정당하게 인증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외국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에 의한 증명을 받은 번역문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0180 판결에 의하

7) 金能煥·閔日榮(編), 「註釋民事訴訟法(V)」(제7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p.395(김용상 집필부분).

8) 중재법 제8조 제3항 제2호는 “편지, 전보(電報), 전신(電信), 팩스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도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보고 있다.

면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중재판정의 경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번역문을 반드시 뉴욕협약에서 정한 엄격한 형식을 갖춘 것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만약 당사자가 위와 같은 형식에 따르지 않은 번역문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서중제출자의 비용부담으로 전문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보완시킬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 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 4. 중재판정문 및 중재합의서의 제출 및 그 효과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구하는 당사자가 제출할 서류는 위 세 가지 서류뿐이고, 중재판정이 한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제외한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 서류들에 의하여 중재판정과 그 전제로 된 중재합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을 요하고 이것으로 족하다. 그밖의 증거에 의하여 중재판정, 중재합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중재판정,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등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제출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sup>9)</sup>

이에 관하여 앞서 살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0180 판결에 의하면 뉴욕협약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들의 제출을 집행판결사건의 소의 적법요건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의 존재 및 그 내용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까지 그 제출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의 존재 또는 그 내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에 대한 증명은 오로지 위 조항에 정한 서류로써만 하여야 한다는 증거방법에 관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여기서 원본이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실물을 신청서 등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원본이나 등본의 제출에 갈음하여 그 사본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하여 '성립인정'으로 인부하였다면, 이는 위 협약의 해석상으로도 적법한 원본이나 등본의 제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sup>10)</sup>

위와 같은 법리는 우리 중재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서도

9) 小島武司·高桑昭(編), 「注解仲裁法」, 靑林書院, 1988, p.376(岩崎一生·高桑昭 집필부분).

10) 이 판결은 뉴욕협약이 기본적으로 체결국들 사이에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성립한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을 용이하게 해주려는 취지에서 출발한 협약이라는 점에다가 국제적으로도 위 협약 제4조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위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sup>11)</sup>

위 판결에서 실시하는 바와 같이 이들 서류의 제출이 집행판결사건의 소의 적법 요건은 아니므로, 이들 서류는 제소 후 소송절차에서 제출해도 된다. 집행판결 청구의 소 제기시에 위 각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법원으로서는 바로 청구를 기각할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두어 보정할 것을 명함이 타당할 것이다.<sup>12)</sup>

### Ⅲ. 뉴욕협약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

#### 1. 개관

우리나라에서 뉴욕협약을 적용받는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할 경우 제출할 서류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재법 제3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뉴욕협약 제4조가 직접 적용된다. 특히 우리 법은 뉴욕협약을 번역하여 우리 조문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뉴욕협약을 직접 적용하고 있으므로, 그 정문의 해석이 중요하다. 뉴욕협약 제4조의 영어 정문은 “To obtai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mentioned in the preceding article, the party applying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shall, at the time of the application, supply; (a) The duly authenticated original award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b) The original arbitration agreement referred to in article II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② If the said award or agreement is not made in an official language of the country in which the award is relied upon, the party applying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ward shall produce a translation of these documents into such language. The translation shall be certified by an official or sworn translator or by a diplomatic or consular agent.”라고 규정하고 있다.

뉴욕협약 이전의 제네바협약 제4조는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관정의 원본 또는 관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령의 요건에 따라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

11) 즐고, “仲裁判정의 執行判決節次,” 「民事訴訟」제9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2005, p.268.  
김상호, “한국에서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중재연구」제17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7. 12, p.12.

12) 石光現, 전계 논문(주 1), p.715.

본 및 관정이 내려진 국가에서 그 관정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증 기타 증거와 그밖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중재판정이 제네바 협약의 적용을 받는 관정일 것, 준거법에 의하여 유효한 중재합의에 의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졌을 것과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에서 정한 중재관정부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법령에 의거하여 구성된 중재관정부에 의하여 내려졌을 것 등을 증명하는 서증 기타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sup>13)</sup> 양자를 비교하여 보면, 뉴욕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의 부담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제네바협약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특히 제네바협약상 요구되던 외국중재판정 집행의 실체적 요건을 증명하는 서증 등을 요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가 이행하여야 할 적극적 요건으로서 형식적, 절차적인 것만을 규정함에 뉴욕협약의 특징이 있다.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뉴욕협약 제4조에 규정된 서류만을 제출함으로써 관정이 집행받을 자격이 있다는 일종의 증거를 제출한 셈이 되고 그 때부터는 상대방이 집행거부사유를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sup>14)</sup>

이와 같이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뉴욕협약 제4조에 규정된 서류만 제출하면 족하고 달리 이행할 적극적 요건은 없고, 더 엄중한 적극적 요건을 정하고 있는 국내법 등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

뉴욕협약 제4조는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가 이행할 최소의 요건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중 일부를 줄일 수는 없고, 또한 중재판정 또는 중재합의의 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등본은 원본 전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원문 중 발췌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sup>15)</sup>

위와 같은 중재합의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거부될 수 있다.<sup>16)</sup>

13) 이에 대한 해설로 小島武司·高桑昭(編), 전계서(주 9), p.352 이하(高桑昭 집필부분) 참고.

14) 줄고, “外國仲裁判定의 承認과 執行-뉴욕協約을 中心으로-”, 『재판자료』 제34집, 법원행정처, 1986, p.672. Gary B.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Volume II*, Wolters Kluwer, 2009, p.1702.

15) Albert Jan van den Berg, *The Arbitration Convention of 1958*, Kluwer Law and Taxation, 1981, p.250.

16) 대판 2004. 12. 10. 2004다20180 판결은 뉴욕협약의 적용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당사자 일방이 외국의 상사중재원에 중재판정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위 협약 제2조에 정한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위 사건에서 중재합의의 서면성을 부정한 것은 뉴욕협약에 금반언의 법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간과한 것으로서 잘못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있다. 石光現, 『國際商事仲裁法研究』 제1권, 박영사, 2007, p.366.



또한 뉴욕협약 제4조에서 정한 서류들의 제출 역시 앞서 우리 중재법 제37조 제2항에 정한 서류들과 마찬가지로 집행판결 청구의 소의 적법요건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의 존재 및 그 내용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까지 그 제출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sup>17)</sup>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의 존재 또는 그 내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증명은 오로지 위 조항에 정한 서류로써만 하여야 한다는 증거방법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sup>18)</sup>

아래에서는 뉴욕협약 제4조에 규정된 서류를 순차로 살핀다.

## 2. “The duly authenticated original award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뉴욕협약은 중재판정으로 “The duly authenticated original award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authentication”(형용사는 authenticated)은 문서의 경우 그 제출자가 주장하는 작성자가 작성한 것, 즉 문서의 진정 성립을 증명하는 것이므로,<sup>19)</sup> “the authenticated original award”는 중재판정에 기재된 중재인들의 서명의 진정함이 증명된 중재판정문 원본을 의미하고,<sup>20)</sup> “the duly authenticated original award”은 그러한 중재판정문 원본임이 정당하게 증명된 것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정당하게 인증된 판정 원본”이라고 하

17) Dr Peter Binde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in UNCITRAL Model Law Jurisdictions*, Thomson Reuters, 2010, p.409.

18) Emilia Onyema, “Formalities of the Enforcement Procedure(Articles III&IV)”, *Enforcement of Arbitration Agreements and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The New York Convention in Practice*, Cameron May, 2010, p.606.

19) 영미 증거법상 “authentication”은 광의로는 어떤 주장에 관련된 물질적인 목적물이 인적인 관련이 있을 때 그와 같은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여 법정에서 증거로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이후 증거로서의 가치가 평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컨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의류의 경우 범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것, 문서의 경우에는 그 제출자가 주장하는 작성자가 작성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Paul C. Giannelli, *Understanding Evidence(2nd Ed.)*, LexisNexis, 2005, p.385. McCormick, *On Evidence(4th Ed.)*, West Publishing Co., 1992, p.402. 또한 Black’s Law Dictionary(6th Ed.), West Publishing Co., 1990, p.132는 “authentication of a writing means (a) the introduction of evidence sufficient to sustain a finding that it is the writing that the proponent of the evidence claims it is or (b) the establishment of such facts by any other means provided by law”라고 한다.

20) Albert Jan van den Berg, *supra* note 15, p.251. Emilia Onyema, *supra* 18, p.608. 또한 석광현, 전계 논문(주 1), p.715.

는 것만으로는 그 인증 내지 증명의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재인들의 서명의 진정함이 정당하게 증명된 판정 원본이라고 함이 정확할 것이다.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는 정당하게 원본과 동일함이 증명된 중재판정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sup>21)</sup> 따라서 이 조항에 있어서 “authentication”은 서명에 관한 것이고 “certification”은 전체로서의 문서에 관한 것이다.<sup>22)</sup>

뉴욕 협약은 이들 서류에 대하여 모두 “정당하게” 서명의 진정함이나 원본과 동일함이 증명되었음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증명할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위 사항의 증명을 요구한다고 볼 것이고, 그 증명하는 방법은 각국의 법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명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채 정당하게 증명될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sup>23)</sup>

중재판정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당하게 증명을 할 권한 있는 자는 중재지 소재국 또는 집행신청을 받은 국가 중 어느 국가의 법에 따라서는 권한이 있으면 된다.<sup>24)</sup> 그 권한 있는 자는 국가에 따라 상이하나 대체로 법원공무원, 공증인 또는 외교관이나 영사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집행신청을 받은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중재지 소재국의 외교관이나 영사관에게 위와 같은 증명을 요청할 수도 있고, 중재지 소재국에 주재하고 있는 집행신청을 받은 국가의 외교관이나 영사관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sup>25)</sup> 실무상으로는 중재지 소재국에 있는 집행신청을 받은 국가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에 의한 증명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한다.<sup>26)</sup>

중재판정문의 등본이 제출된 경우 상설 중재기관이 그 원본을 보관하고 있고 그 중재기관의 사무국이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27)</sup>

중재판정의 등본의 경우 위 문언 해석상 그 원본은 서명의 진정함이 증명된 것이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있으나, 정당하게 증명할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원본과

21) Black's Law Dictionary, *supra* 19, p.228는 “Certified copy. A copy of document or record signed and certified as a true copy by the officer to whose custody the original is intrusted.”라고 한다.

22) Albert Jan van den Berg, *supra* note 15, p. 251. 石光現, 전계 논문(주 1), p.715.

23) Emilia Onyema, *supra* 18, p.610.

24) Emilia Onyema, *ssupra* 18, p.610은 종전의 제네바 협약 제4조 제1항은 판정이 내려진 곳의 법에 따라 그 서명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승인 또는 집행을 요구받은 국가의 법원에 더 넓은 재량을 인정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제한이 삭제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25) Albert Jan van den Berg, *supra* note 15, p.253.

26) Albert Jan van den Berg, *supra* note 15, p.253. 石光現, 전계 논문(주 1), p.716.

27) 石光現, 전계 논문(주 1), p.716.

동일하다고 증명된 등본이 제출되는 이상 서명의 진정함이 증명된 원본의 등본이 아니어도 위 규정상 정당하게 증명된 중재판정의 등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sup>28)</sup>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정당하게 원본과 동일함이 증명된 등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판정 원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중재인들의 서명의 진정함을 정당하게 증명할 부담이 있고, 예컨대 3인의 중재인들의 국적 내지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인다. 다만 중재의 당사자들이 대부분의 경우 성립의 진정, 즉 서명의 진정함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 그 서명의 진정함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는 드물 것이다.

### 3. “The original arbitration agreement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The original arbitration agreement”는 중재합의의 원본을 의미하고,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는 정당하게 원본과 동일함이 증명된 등본을 의미한다. 중재판정의 등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는 중재합의의 등본을 증명할 수 있고, 중재합의의 등본은 공증인도 증명할 수 있는데, 공증인은 중재지 소재국의 공증인이든 집행을 구하는 국가의 공증인이든 관계없다.<sup>29)</sup>

### 4. 뉴욕협약에 따른 번역문의 증명

뉴욕협약 제4조 제2항은 전문에서 “전기 판정이나 합의가 원용될 국가의 공용어로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문서의 공용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후, 후문에서 “번역문은 공적 기관인 번역관 또는 선서한 번역관, 외교관 또는 영사관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공적인 번역관’(official translator) 또는 ‘선서한 번역관’(sworn translator) 제도가 없다. 종래 번역문에 대하여 중재판정지국에 있는 우리 외교관 또는 영사관에 의한 증명을 받아오는 수가 있고 이는 위 협약상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중재판정 번역문을 외교관

28) Albert Jan van den Berg, *supra* note 15, p.257. Emilia Onyema, *supra* 18, p.609.

29) 서동희, “外國仲裁判定の 한국내 집행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 「중재」제298호, 대한상사중재원, 2000, p.66.

이나 영사관에게 증명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드물고, 공증인으로부터 소위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번역공증을 받은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 번역문에 대해서는 번역요건을 특별히 문제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sup>30)</sup> 그러나 뉴욕협약상 공증인은 번역문을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sup>31)</sup>

뉴욕협약 이전의 제네바 협약에서는 “번역문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도 “번역문은 그 내용이 정확하다는 점에 대하여 집행을 구하는 국가의 외교관이나 영사관 또는 공적인 또는 선서한 번역관에 의하여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뉴욕협약은 단순히 이들에 의한 증명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번역문의 내용이 정확하다는 점에 대하여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sup>32)</sup> 또한 그 증명의 주체는 중재지 소재국 또는 집행신청을 받은 국가 중 어느 국가의 법에 따라서든 권한이 있으면 된다.<sup>33)</sup>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다53054 판결 역시 뉴욕협약 제4조 제2항의 취지는 번역관 또는 외교관들에 의해서 중재판정 등이 직접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들에 의해서 당해 중재판정의 번역문임이 증명되면 족하고, 위 규정에서 증명이란 당해 중재판정을 번역한 번역문이라는 사실 확인일 뿐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또한 그 번역의 정확성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 5. 현행 중재법과 뉴욕협약의 비교

위에서 본 것처럼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에 관하여 뉴욕협약 제4조와 우리의 현행 중재법 제37조는 다소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한편 1985년 UNCITRAL 모델법 제35조 제2항은 중재판정과 중재합의에 관하여서는 뉴욕협약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sup>34)</sup> 번역문에 관하여서는 단지 “정당하게 증명된 번역문(a duly certified translation)”이라고만 규정하여 뉴욕협약보다 그 요

30) 김갑유 대표집필,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2, p.298.

31) 石光現, 전계 논문(주 1), p.716.

32) 김상호, 전계 논문(주 11), p.12. Albert Jan van den Berg, *supra* note 15, p.260. 그러나 石光現, 전계 논문(주 1), p.716는 뉴욕협약 제4조 제2항이 번역문의 증명을 요구하는 취지는 번역문의 정확성을 증명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3) Emilia Onyema, *supra* 18, p.610.

34) 위 조항의 중재판정에 관한 부분의 영어 원문은 “the duly authenticated original award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and the original arbitration agreement referred to in article 7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로서 뉴욕협약의 영어 정문과 일치한다.

건을 완화하고 있다.<sup>35)</sup> 결과적으로 위 모델법을 수용한 우리 법은 적어도 중재판정에 관한 한 UNCITRAL 모델법을 수정하여 받아들였으나, 중재합의와 번역문 부분은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뉴욕협약(제4조)	중재법(제37조 제2항)
서명의 진정함이 증명된 판정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중재판정 정보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
중재합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중재합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
(중재판정/중재합의) 공적인 또는 선서한 번역관이나 외교관·영사관에 의하여 증명된 번역문	(중재판정/중재합의) 정당하게 인증된 번역문

다음 현행 중재법 제37조 2항과 뉴욕협약 제4조상 제출할 서류를 서류별로 검토한다.

중재판정의 경우는 우리 법은 중재판정 정보를 규정하나, 뉴욕협약은 서명의 진정함이 증명된 판정 원본을 규정하는 점에서 다르다.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 중재판정을 승인받거나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서는 뉴욕협약에 따라 서명의 진정함이 증명된 판정 원본을 제출함이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외국중재판정의 정보, 즉 중재판정의 등본으로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한 서면이 제출되었다 할지라도 뉴욕협약 제4조 제1항 (a) 후단의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거꾸로 우리 법이 적용되는 국내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의 경우 중재판정의 정보가 아니라 서명의 진정함이 증명된 중재판정의 원본이 제출되더라도 이는 우리 법상 규정된 중재판정의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볼 경우 이 부분에 관한 한 우리 중재법 제37조 제2항과 뉴욕협약은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볼 것이다.

중재합의 원본을 규정한 부분은 중재법과 뉴욕협약이 일치하고,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의 등본을 제출할 경우에 관한 규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이 경우 뉴욕협약은 등본이 정당하게 증명될 것임을 요구하나, 우리 법은 등본이 정당하게 인증될 것임을 요구하는 점이 다르다.

번역문의 경우에는 뉴욕협약은 그 증명의 주체를 공적인 또는 선서한 번역관이나

35) 이는 각국의 실무상 차이가 많으므로 번역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Dr Peter Binder, *supra* note 17, p.410.

외교관 또는 영사관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 법상으로는 단순히 인증만을 요구하고 그 인증의 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우리 법이 더 넓은 범위의 번역문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이 경우 역시 뉴욕협약은 증명을 요구하나, 우리 법은 인증을 요구하는 점은 다르다.

#### IV. 각국의 입법례

미국은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경우 그 제출서류에 관하여 뉴욕협약 제4조를 직접 적용하고 있다.<sup>36)</sup> 영국은 1996년 중재법 제102조에 뉴욕협약 제4조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sup>37)</sup>

프랑스는 외국 또는 국제중재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하기 위하여서는 중재판정의 원본과 중재합의 또는 그 서명의 진정함이 증명된 등본들(the original award, together with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duly authenticated copies of such documents)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나,<sup>38)</sup> 중재판정 원본에 대하여 그 서명의 진정함의 증명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프랑스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프랑스어 번역문의 제출이 요구되는데, 종전에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명단에 있는 번역인에 의하여 증명된 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2011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그러한 제한 없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이를 완화하였다.<sup>39)</sup>

독일은 국내외 모든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신청의 경우 그 제출서류 요건을 완화하여 중재합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중재판정도 그 원본 또는 인증된 등본(der Schiedsspruch oder eine beglaubigte Abschrift des Schiedsspruchs)의 제출을 요구하며, 그 인증을 법원의 소송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

36) Jack J. Coe J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American Principles and Practice in a Global Context*, Transnational Publishers, 1997, p.330.

37) 영국법계인 홍콩은 중재령 제85조에 뉴욕협약 제4조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싱가포르의 국제중재법 제3조에서 UNCITRAL 모델법이 원칙적으로 직접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별표 1(First Schedule)로 위 모델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므로, 모델법 제34조를 직접 적용하고 있다.

38)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4편 중재 제3장 외국 또는 국제중재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제1515조 제1항.

39)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1512조 제4항은 그와 함께 법원은 신청자에게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명단에 있는 번역인 또는 유럽연합의 타 회원국, 유럽경제지역의 체약국 또는 스위스의 행정 또는 사법 당국이 공인한 번역인에 의한 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안건형·유병욱, “프랑스 개정 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민사소송」제15권 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2011, p.108 참조.

정하고 있다.<sup>40)</sup> 즉 판정 원본의 서명의 진정함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 등본에 대하여서 인증만을 요구하며, 번역문에 관한 요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국내외 모든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신청의 경우 그 제출서류 요건을 완화하여 중재판정문의 사본, 당해 사본의 내용이 중재판정문과 동일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 및 중재판정문의 일본어에 의한 번역문을 요구하나,<sup>41)</sup> 중재판정의 서명의 진정함의 증명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번역문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이는 그 정확성보다 다툼이 발생한 경우 그 집행결정 절차에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sup>42)</sup><sup>43)</sup>

## V. 현행법에 대한 비판론 및 개선방안

### 1. 현행법에 대한 비판론

#### (1) 이원적 구성으로 인한 혼란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중재법은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를 제37조에서 규정하면서도,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는 뉴욕협약의 정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외국중재판정의 경우는 비록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나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그 승인·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가 달라진다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 (2) 중재판정 정본과 원본의 제출에 관하여

우리 중재법은 제32조에서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중재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한 후(제1항), 이에 따라 “작성·서명된 중재판정의 정본(正本)은… 각 당사자에게 보내고, 중재판정의 원본은 그 송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

40) 독일 민사소송법 제10편 중재절차 제9장 법원의 절차 제1064조.

41) 일본 중재법 제46조 제2항.

42) 近藤昌昭 외 4인, 「仲裁法コンメンタル」, 商事法務, 2003, p.270. 小島武司·高桑昭(編), 「注釋と論点仲裁法」, 青林書院, 2007, p.278(高田裕成 집필부분). 또한 일본에서의 논의는 김연숙, “일본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적용법규와 승인거부사유를 중심으로—”, 「중재연구」제20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0. 12, p.25 이하 참조.

43) 그밖에 각국의 입법례에 관하여서는 A/CN.9/656 Report on the survey relating to the legisla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Foreign Arbitral Awards(New York, 1958), p.14 이하에 실려 있는 UNCITRAL에서 뉴욕협약 가입국에 대하여 뉴욕협약의 제4조 제1항의 이행을 위한 입법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참조.

면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송부하여 보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sup>44)</sup>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제55조 역시 그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sup>45)</sup>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 제35조 제1항은 중재판정부가 서명한 중재판정문(the written Award signed by the Arbitral Tribunal)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재판정문에 대하여 별도로 정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원본을 각 당사자에게 보내는 것으로 하고 있다.<sup>46)</sup> 대표적인 국제중재기관인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규칙 제28조 제1항도 동일하게 중재판정부가 서명한 판정문(the text signed by the Arbitral Tribunal)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47)</sup>

또한 UNCITRAL 중재규칙 제34조 제6항은 중재인이 서명한 중재판정문 등본(copies of the award signed by the arbitrators)을 당사자에게 보낸다고 규정하고 있고,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 28.65는 중재판정의 증명된 등본(certified copies)을 당사자에게 보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를 중재지로 하되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이나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가 행하여질 경우 당사자는 중재판정 정본이 아닌 중재판정 원본을 받게 되고, 국내중재판정인 그 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하기 위하여서는 중재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의 정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위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중재판정의 원본을 그대로 제출할 경우 상

44) 중재법에 의하면 각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고(제34조 제1항),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제36조 제3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해서는 중재판정의 정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제37조 제2항) 규정하고 있다.

45) 다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2010년 발간한 중재법규집에 의하면 중재판정의 정본을 “a duly authenticated arbitral award”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uthentication이 서명의 진정함의 증명을 의미함에 비추어, “a formal copy of the award”라고 번역함이 정확할 것이다.

46) 위 국제중재규칙상 중재판정의 원본을 별도로 관할 법원에 보낸다는 규정은 없고, 이는 중재법 제32조가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국내에서 위 국제중재규칙에 의한 중재가 행하여질 수도 있으므로(같은 규칙 제2조 제4호) 이 경우 위 중재법 제32조가 적용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한편 같은 규칙 제35조 제2항은 “중재판정부와 사무국은 중재판정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형식성을 구비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7) 같은 규칙 제28조는 이어서 제2항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사무총장에 의하여 진실하다고 증명된 판정문의 추가 등본(Additional copies certified true by the Secretariat General)이 당사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제5항에서 중재판정부와 사무국은 당사자가 추가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해석서로는 Michael W. Bühler and Thomas H. Webster, *Handbook of ICC Arbitration(2nd Ed.)*, Thomson Reuters, 2008, p.392이하 참조.



대방이 다룬다면 그 원본에 대하여 그 서명의 진정함을 증명할 것을 요한다고 해석할 것인데, 그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sup>48)</sup>

다음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이나 국제상업회의소로부터 중재판정의 원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승인·집행받기 위하여서는 뉴욕협약에 따라 그 중재판정의 서명이 진정함을 증명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의 경우에는 단지 중재판정문의 등본을 받을 뿐이므로 정당하게 증명된 등본임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각국의 중재법이나 중재기관에 따라 중재판정의 원본이나 정본을 받게 되는지, 그에 대하여 인증 내지 증명이 붙어 있는지가 상이하고, 그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서는 우리 법상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데, 이와 같은 사항은 모든 형식 내지 절차상의 문제로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 될 것이다.

### (3) 인증에 대하여

인증이라 함은 권한 있는 자가 문서의 서명이나 동일성 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고, 권한 있는 자라 함은 각 문서마다 정하여지는데,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외교관, 공증인 및 중재판정부 내지 중재기관의 사무국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증에 관한 법제는 각국에 따라 다르므로 외국에서 한 인증이 바로 한국 법상으로도 인증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에 의하면 홍콩 공증인의 사문서 인증에 대하여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sup>49)</sup> 이를 중재판정 집행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그 서명의 진정함이나 원본과 동일함에 대하여 외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국법상의 인증으로 곧바로 인정받을 수는

48) 다만 이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이나 국제상업회의소로부터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증명을 받아서 제출한다면 중재법 제37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의 등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49) 위 판결은 원고가 서증의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본을 제출하면서 그에 대하여 홍콩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다시 홍콩주재 한국영사관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관하여 “사서증서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제도는 우리나라 공증인법의 규정(제3조, 제12조, 제13조, 제57조 내지 제61조)에 따라 자격을 갖춰 임명된 공증인이 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 원본에 서명날인토록 시키거나 이미 서명 날인된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서명 날인한 촉탁인의 확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의 대리권의 증명 등의 소정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엄격성에 기하여 원본인 사서증서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게 하는 것이어서, 홍콩공증인이 인증한 서증 사본의 인증에 의한 원본의 성립인부에 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우리나라 공증인의 사문서 인증에서의 증거력 법리를 마찬가지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없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의 등본을 제출할 경우 한국법에 의한 인증을 의미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논란을 막고 상당한 방법으로 증명하면 족하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하여 “인증”이라는 용어보다 “증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뉴욕협약이나 UNCITRAL 모델법상의 “duly certified”라는 용어는 “정당하게 인증된” 보다는 “정당하게 증명된”으로 번역함이 각국에 따라 증명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모델법의 취지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sup>50)</sup>

#### (4) 간략화의 필요성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그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가 유가증권과 같이 그 자체에 권리관계가 화체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식적 내지 절차적인 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51)</sup> 그러므로 그와 같은 형식적 내지 절차적인 요건을 들어서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편협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1985년 UNCITRAL 모델법 제정 당시에도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에 관하여 뉴욕협약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그 해설에서 이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려고 한 것이고, 모범법보다 완화된 요건을 정하는 것은 모범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었는데,<sup>52)</sup> 2006년에 다시 이를 대폭 개정하면서 그 제출할 서류에 관한 형식적인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 법도 이와 같이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그 승인·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중재법보다 제출서류를 간략하게 할 필요가 있다.

50) 石光現, 전계 논문(주 1), p, 718. 일본 중재법 제46조 제2항도 “중재판정문의 사본, 당해 사본의 내용이 중재판정문과 동일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하고 있다.

51)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에 관하여 Dr Peter Binder, *supra* note 17, p.409는 승인과 집행을 위한 형식적 요건(Formal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라는 표제 아래, Emilia Onyema, *supra* note 18, p.597는 집행절차의 형식적 사항(Formalities of the Enforcement Procedure)이라는 표제아래 설명하고 있다.

52) A/CN.9/264(25 March 1985) -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alytical commentary on draft text of a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p.139.

## 2. 개선방안

### (1) 제출서류의 일원화

먼저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국내중재판정이든, 뉴욕협약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이든, 그밖의 외국중재판정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출서류를 간략화하고, 이를 모든 중재판정에 적용됨을 중재법에 명시하면 될 것이다.<sup>53)</sup>

### (2) 제출서류를 간략화하는 방안

#### 1) 제출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방안

첫째, 제출서류를 일체 요구하지 않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제출서류를 일체 요구하지 않더라도 승인·집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그 대상인 중재판정을 특정하기 위하여 중재판정을 제출할 것이며, 상대방이 중재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당연히 제출될 것이다. 이 방안을 채택할 경우 제출서류의 흠결이라는 형식적인 사항으로 승인·집행이 거부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제출서류의 완비 및 그 심사를 위하여 걸리는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를 제출할 경우 그 제출방법은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의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그 진정 성립 여부, 원본의 존재 및 원본과의 일치 여부, 번역문의 정확성 등은 통상의 서증과 동일하게 서증의 인부절차 및 그 형식적 증거력의 입증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의할지라도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의 원본이나 등본 제출에 갈음하여 그 사본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하여 성립인정으로 인부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원본이나 등본의 제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이미 위 판례에 따라 실무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청구의 경우 그 외국판결의 원본, 정본 또는 그 인증등본의 제출이 그 집행을 위한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

53) 중재법 제37조 제2항에 간략화된 제출서류를 규정한 후, 제2조에서 제37조가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외국중재판정에 적용됨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면 될 것이다.

에 비추어, 중재판정의 집행절차에서도 같은 방안을 채택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 2) 인증이나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방안

둘째, 단순히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개정된 UNCITRAL 모델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뉴욕협약이나 현행법이 요구하는 인증이나 증명의 요건을 생략하는 방안이 있고, 이 방안을 채택한다면 중재합의의 인증 내지 증명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그 실제의 운영은 위 가. 방안에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3) 중재합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방안

셋째 중재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이 없을 것이고, 중재합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중재합의가 제출될 것이므로 중재판정만의 제출만을 요구하는 방안이 제안되어 있다.<sup>54)</sup>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중재합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 집행절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개정된 UNCITRAL 모델법과 독일법, 일본법이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 4) 번역문에 관하여

번역문의 경우 중재판정의 번역문의 정확성은 각기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점검되게 되고, 현행법상으로도 번역문의 정확성의 증명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실무상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경우 그 협정상 인정되지 않는 공증인에 의한 번역문이 제출되어도 현실적으로 문제삼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독일법과 같이 번역문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지 않거나, 일본법과 같이 아무런 제한 없이 번역문의 제출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중재법에서 번역문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77조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번역문을 제출하게 될 것이다.

### (3) 사건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를 일원적으로

54) 石光現, 전계 논문(주 1), p.720. 정선주 “우리나라의 중재법 개정방향”, p.28. 이는 2012. 12. 10.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개최된 “중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발표된 논문인데 아직 공간되어 있지 아니하다.

규정함이 필요한 점, 개정된 UNCITRAL 모델법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의 입법이 중재판정문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점, 중재판정 및 중재합의의 인증이나 증명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려움이 있는 점, 중재판정의 존재는 중재합의의 존재를 추정하게 하고, 중재합의의 서면제출 여부를 불문하고 유효한 중재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승인·집행의 거부사유로서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는 국내중재판정이든 외국중재판정이든 관계없이 개정된 UNCITRAL 모델법과 같이 인증이나 증명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중재판정의 원본이나 그 등본”만으로 한정하고, 중재합의는 제외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번역문의 경우는 그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여도 민사소송법상 그 제출이 요구되므로 중재법상 규정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나, 개정된 UNCITRAL 모델법과 같이 번역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기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함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 VI. 결 론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형식적인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심사를 간략화하여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촉진할 필요가 크다.

우리의 현행법은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뉴욕협약에서 정한 서류 내지 그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할 것인데, 뉴욕협약이 비록 그 이전의 중재에 관한 국제협약에 비하여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구할 때 가급적 의무사항을 줄이기 위하여 제정되었다고는 하나, 1958년에 제정된 협약으로서 그 이후 반세기 이상에 걸쳐 국제화가 진행되어 그 당시 상상할 수 없었을 만큼 전세계적으로 교류와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로서는 뉴욕협약의 정함에 집착할 필요는 없으며, 개정된 UNCITRAL 모델법이 실제로 그러하다.

우리나라도 2006년 개정된 UNCITRAL 모델법에 따라 “중재판정의 원본이나 그 등본”과 단순히 번역문의 제출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친중재 정책을 택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효과를 거둬와 동시에 중재 이용자들이 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함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갑유 대표집필,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2.
- 金能煥·閔日榮(編), 「註釋民事訴訟法(Ⅲ)」(제7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 石光現, 「國際商事仲裁法研究」, 제1권, 박영사, 2007.
- 양병희 외 8인, 「註釋仲裁法」, 대한상사중재원·한국중재학회, 2005.
- 김상호, “한국에서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중재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7.
- 김연숙, “일본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적용법규와 승인집행거부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0.
- 서동희, “外國仲裁判定의 한국내 집행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 「중재」, 제298호, 대한상사중재원, 2000.
- 石光現,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제도의 개선방안”,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5권, 박영사, 2012.
- 손경한·심현주, “중재합의에 대한 새로운 고찰”, 「중재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3.
- 안건형·유병욱, “프랑스 개정 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민사소송」, 제15권 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2011.
- 이강빈,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의 개정동향”, 「중재연구」, 제16권 제3호, 2006.
- 李鎬元, “外國仲裁判定의 承認과 執行-뉴욕協約을 中心으로-”, 「재판자료」, 제34집, 법원행정처, 1986.
- 李鎬元, “仲裁判定의 執行判決節次”, 「民事訴訟」, 제9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2005.
- 정선주 “우리나라의 중재법 개정방향”, 2012. 12. 10.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개최된 “중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발표 논문
- 小島武司·高桑昭(編), 「注解仲裁法」, 青林書院, 1988.
- 小島武司·高桑昭(編), 「注釋と論点仲裁法」, 青林書院, 2007.
- 近藤昌昭 외 4인, 「仲裁法コンメンタル」, 商事法務, 2003.
- A/CN.9/264,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Analytic commentary on draft text of a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

A/CN.9/656, Report on the survey relating to the legisla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1958.

Albert Jan van den Berg, *The Arbitration Convention of 1958*, Kluwer Law and Taxation, 1981.

Dr Peter Binde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in UNCITRAL Model Law Jurisdictions*, Thomson Reuters, 2010.

Emilia Onyema, "Formalities of the Enforcement Procedure(Articles III&IV)", *Enforcement of Arbitration Agreements and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The New York Convention in Practice*, Cameron May, 2010.

Gary B.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Volume I,II, Wolters Kluwer, 2009.

Jack J. Coe J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American Principles and Practice in a Global Context*, Transnational Publishers, 1997.

McCormick, *On Evidence(4th Ed.)*, West Publishing Co., 1992.

Michael W. Bühler and Thomas H. Webster, *Handbook of ICC Arbitration(2nd Ed.)*, Thomson Reuters, 2008

Paul C. Giannelli, *Understanding Evidence(2nd Ed.)*, LexisNexis, 2005.

## ABSTRACT

### Documents to Produce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Ho-Won Lee

The current Korean Arbitration Act (KAA) §37② requires that a formal copy of an arbitral award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and the original arbitration agreement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be produced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arbitral award. But as the KAA provides that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arbitral award to which the New York Convention applies shall be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the duly authenticated original award should be produced instead of a formal copy in that case.

The provision on the documents to produce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is set to establish a reasonable and transparent standard and to facilitat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wards by prohibiting parochial refusal of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n the grounds of formal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ose document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ly acknowledged standard. It would be desirable to amend KAA §37② to require only "the original arbitral award or a copy thereof" without authentication or certification and a translation into Korean without any condition, adopting the 2006 amendment to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ey Words** : Arbitral award, Arbitration Agreement, Original, Formal Copy, Copy, Authentication, Certification, Translation